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광성 의원
- 제안일자 : 2024. 4. 12.
- 회부일자 : 2024. 4. 16.
- 상정일자 : 2024. 4. 16.

2. 제안이유

- 우리 군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규정(안 제3조)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조치(안 제5조 ~ 제6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서 지자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우리 군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는 우리 군의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¹⁾,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함.
-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단, 거짓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함.

1) 조례안의 내용이 법과 목적 및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나, 기준 등을 다르게 규정하여도 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실정에 맞게 별도 실시하는 것은 유효함(판례 대법원96추244)

5. 종합검토의견

- 국가에서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을 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누릴 권리가 우리 군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도 있으므로 보건위생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인정되고,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청소년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이므로 제정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안에 따른 보편적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²⁾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소관부서와의 논의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